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3

인권정보자료실
CPh1.8

언론피해구제 길라잡이

언론보도 피해
이동기 대처합시다

손해 배상

1999

CPh1.8

언론개혁시민연대

본 책자는 시민운동지원기금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3

이 권 자료실		
등록일	등록기록	자료번호
	813	89

언론보도피해 길라잡이

언론보도피해 이렇게 대처합시다

1999

언론개혁시민연대

제1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왜 필요한가?

제2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에서 하는 일

- 민, 형사 소송 대행
- 언론피해 구제 상담
- 언론중재 대행

제3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주요 활동사례

제4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른 점

제5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전국 변호인단 연락처
-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실행위원 연락처

제6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의 도움은 궁짜인가?

제7장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제8장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침해 판례

제9장 언론에서 자주 범하는 위법 취재보도 사례

제10장 대상매체는?

언론보도피해 길라잡이 목차

언론보도피해 이렇게 대처합시다

부 록

언론피해구제관계법

제 1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왜 필요한가?**1.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미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

신문과 방송, 잡지 등 매체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보도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당사자가 하소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이 소송인데, 소송은 힘있는 언론사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변호사 비용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도 못내고 병어리 냉기증 식으로 참아왔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었고,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를 만든 것이다.

2.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해 바른 언론을 정착시킨다

각 언론사들은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하지 않기 위해 자체 기사심의제도를 만들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음부즈맨 제도도 도입하지 않고 자체 윤리강령 조차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에 밀려 종이조각으로 변했다. 언론사 스스로 자정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같은 제 3의 음부즈맨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있어야 불공정 보도나 오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언론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제 2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에서 하는 일**1. 민·형사 소송 대행**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기관이나 개인은 정보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소송을 통해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은 소송절차를 잘 모르고, 소송준비가 복잡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보복의 우려, 비용의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급적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담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에서는 민·형사소송을 대행해 주고 있다.

2. 언론피해 구제 상담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에서는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언론피해는 사안에 따라 구제방식이 다양한 만큼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먼저 상담을 원하면 이에 성실히 응한 다음, 구제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한다. 언론피해 구제상담은 누구나 환영하며 상담료는 없다. 구제방법에는 크게 사전적 구제책과 사후적 구제책으로 나뉘어 지며,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반박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처벌, 원상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3. 언론중재 대행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행사절차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다. 피해를 본 개인이나 단체는 직접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가 정보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경우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자료준비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가 도와주고 있다.

제 3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주요 활동 사례**활동사례** ①**상담내용**

지난 98년 1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접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김○○ 중사가 지난 2월에 같은 부대에서 의문사한 김○○ 중위의 살해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8년 12월 9일, 10일, 11일의 주요 일간신문과 방송 뉴스에서는 "김○○ 중사가 북과의 접촉이 들통날까봐(또는 북의 지령을 받아)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김○○ 중위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김 중사의 실명은 물론 인물 사진까지 게재했다. 또한 김 중위의 의문사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중사의 알리바이 조작 가능성', '김 중사의 수상한 특혜인사' 등 제 3자의 기사를 통해 김○○ 중사를 김○○ 중위의 살해범으로 몰고갔다. 이에 지난 1월 말 김 중사 부모들이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를 찾아와 언론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범으로 지목했다고 하소연하면서 피해구제에 대해 상담했다.

처리 결과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신문과 방송의 관련 보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보도 내용이 김○○ 중사가 김○○ 중위를 살해했거나 살인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는 김 중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김○○ 중위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만, 김 중사와 그 가족들이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는 마땅히 구제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 판단 아래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소속 변호사는 김 중사와 그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발표한 지난 4월 14일을 전후해 D일보, K신문, S방송 등 3개사를 상대로 총 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김 중사 및 그 가족들과 상의해 다른 언론사를 추가로 제소할 방침이다.

활동사례 ②**상담내용**

장애인 단체인 A협회는 주간전문지인 B신문이 98년 11월 19일자 'A협회 국고 보조금 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 및 사설에서 "A협회(회장 장○○)가 국고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B신문은 지난 98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A협회와 장○○ 회장을 비난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게재해 왔다고 호소했다.

처리 결과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B신문의 관련 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A협회와 장○○ 회장에게 피해를 입혔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A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통보해 주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것은 기일이 지나(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해야 함) 불가능하고, 따라서 민, 형사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 주었다. 상당 이후 A협회는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 왔다. A협회는 지난 3월 B신문의 발행인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중이다.

활동사례 ③**상담내용**

경기도에 사는 조○○씨는 S방송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이 98년 12월 21일 '의부증, 의처증' 내용을 방영하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를 방송사가 임의로 지정한 병원으로 데리고 가 의부증 환자로 매도했고, 가족들 인터뷰를 방영하면서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일부 인터뷰 내용이 고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이로 인해 사생활을 침

해받았고, 가족 모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리 결과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는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언론중재와 법적 구제절차를 상담해 주었다. 조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S방송은 99년 1월 18일 방영된 같은 프로그램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내보냈다.

-정정보도문-

"지난해 12월 21일 밤 11시에 방송된 <추적! 사건과 사람들> 제129회 '의심의 높이-의처증·의부증' 편에서 조○○씨 부부에 관한 보도내용과 관련해 조씨 부인 김씨를 3년여 동안 치료해 왔던 주치의는 부인 김씨가 의부증 증상이 있다기보다는 우울증이라는 소견을 내놓았기에 이를 보도합니다."

활동사례 ④**상담내용**

기수 노○○씨는 H일보와 스포츠신문이 99년 2월 22일과 24일자에 '기수 노○○ 시집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기수 노○○씨가 영화감독 한○○씨와 96년경부터 사귀어오다가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라고 보도한 데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했다. 노씨는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결혼계획에 대해 말한 바 없고, 기자에게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처리 결과

연예인 등 공인의 사생활은 언론사의 주요 취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선정성에 기반한 과장보도나 추측보도를 함으로써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노씨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언론중재와 소송 절차를 상담해 주었다. 이후 노씨는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소속 변호사에게 언론중재를 의뢰해 왔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H일보와 스포츠신문은 3월 15일자에 '결혼계획 말한 바 없어 - 노○○씨 밝혀'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내보냈다.

-정정보도문-

"본지는 2월 22일자 27면에 '노○○ 시집간다'라는 제목으로 기수 노○○씨가 영화감독 한○○씨와 96년께 고스트 맘마 주제음악을 맡으면서 사귀어 오다가 올 가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씨는 고스트 맘마의 주제음악을 작곡한 사실이 없고, 결혼을 전제로 한○○씨와 사귀어온 사실이 없

으며, 한씨와의 결혼계획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활동사례 ⑤

상담내용

조○○씨 외 3인은 지난 98년 4월 3일, 채무자에게 보험을 들게 한 후 자살을 교사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것을 강요(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미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자 C일보, J일보, D일보 등 신문의 사회면과 주요 방송사 뉴스들은 ‘보험금을 미끼로 자살을 교사한 가해자’로 보도했다. IMF 시대를 맞아 보험사 기나 악덕 채권자가 기승을 부려 사회문제화되자 이후 K방송, M방송, S방송의 시사교양프로그램들은 연이어 이 사건을 심층 보도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조씨는 99년 2월 25일에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자살교사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로 살인 누명을 벗은 조씨는 그 동안의 언론보도 때문에 주변에서 살인자로 낙인 찍혔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처리결과

언론은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사람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조씨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고, 아직 항소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무죄로 재판이 종결되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상담해 주었다. 조씨는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소속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했고,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활동사례 ⑥

상담내용

99년 4월,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언론들은 연일 관련 보도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보도들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채 노조의 주장을 몰살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와 서울시 쪽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시민의 빌을 불모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철저히 외면했고, “노조원들이 고의적으로 지하철을 고장낸 의혹이 있다”거나 “일부 노조원들이 농성장에서 기관사를 감금했다”고 보도하면서 파업 노조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밖에도 주요 신문과 방송은 사설과 논평을 통해 “파업의 명분이 없다”거나 “파업이 부당하다”고 여론몰이를 해갔고, 심지어는 “불법파업은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검찰의 강경대응을 부추겼다.

처리결과

서울지하철노조와 공공연맹, 민주노총은 문제있는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한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와 피해구제 절차를 상담했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한 언론보도 내용은, J일보 4월 14일자 ‘지하철은 달려야 한다’ 제하의 사설, 4월 20일자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제하의 사설, 4월 21일자 ‘공공연맹이 파업 종용…’ 제하의 기사, 4월 29일자 ‘지하철노조, 진압 요청 전화…’ 제하의 기사, C일보 4월 22일자 ‘규찰대가 기관사 복귀 막는 듯’ 제하의 기사, 4월 22일자 ‘시민들이 견뎌야 파업 끝난다’ 제하의 사설, K신문 4월 23일자 ‘지하철파업, 네이즌 의견’ 제하의 기사 등이며,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이후 C방송, D일보, J일보, C일보의 4월 27일과 4월 28일자에 실린 ‘민주노총 지도부 책임론 제기’ 제하의 기사들이다. 이들 중재신청 사안 중 일부는 합의가 이루어져 언론사들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내보냈고, 일부는 기각되거나 불성립됐다.

제 4 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른 점

1. 기구의 성격부터 다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기구지만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산하 순수 민간시민단체다.

2. 업무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소송 전 단계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민, 형사 소송의 대리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3. 인적 구성도 다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 타협을 주업무로 하는 만큼 판사, 변호사, 학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로 중재위원이 구성돼 있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소송을 많이 다루는 만큼 서울과 지방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4. 업무처리 방식도 다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것으로 업무처리가 끝난 셈이고, 개인은 별도로 이의신청 등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에서는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든 거치지 않은 본인이 원할 경우 민·형사소송 등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책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업무성격과 구성원의 차이가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적대적이거나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는 관계다. 두 기구 모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단체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차이점을 나열한 것은 시민들의 오해와 혼란을 막고 구제방식과 구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서다.

제 5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상담창구(전화 : 02-732-7319, 팩스 : 02-732-7076,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통신 ID : 언기연)에 전화나 팩스를 통해 보도기관과 보도일시, 피해내용 등을 간추려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을 요청하면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소속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 언론중재 절차와 민형사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을 알려준다.

상담접수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받고 있으며,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실(프레스센터 1807호)로 찾아오면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 이후 개인적인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대행해 주고 있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번호인단

이름	직책	소속	전화	팩스	사무실
조영황	본부장	법무법인신화	02)521-2251	02)588-3455	서울 서초동 1572-18 만송빌딩 202호
김재호	번호인단	법무법인비룡법률사무소	02)3479-7839	02)3476-5995	서울 반포4동 51-5 대경빌딩 8층
박인제	"	변호사박민재법률사무소	02)3476-5588	02)3476-5590	서울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301호
배진수	"	법무법인인상한	02)582-6991	02)582-6993	서울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404호
안원모	"	변호사안원모법률사무소	02)561-4774	02)557-4774	서울 삼성동 143-39 신일빌딩 12층
윤종현	"	법무법인사민종합법률사무소	02)522-4706	02)523-7381	서울 서초동 1575-1 고려빌딩 301호
이석연	"	변호사이석연법률사무소	02)593-8100	02)593-9101	서울 서초동 1718-4 중앙빌딩 302호
이석형	"	법무법인한백	02)596-5551	02)596-5550	서울 서초동 1719-4 동일빌딩 4층
황덕남	"	변호사황덕남법률사무소	02)3482-5700	02)3482-5600	서울 서초동 1694-8 우민빌딩 601호
이백수	"	변호사이백수법률사무소	02)598-6787	02)598-6789	서울 서초동 1574-6 대진빌딩 302호
오옥환	"	변호사오옥환법률사무소	02)581-5051	02)581-5054	서울 서초동 1623-1 성신빌딩 401호
임채균	"	변호사임채균법률사무소	02)532-7517	02)532-7538	서울 서초동 1705 청곡빌딩 서관212호
임재연	"	법무법인나리종합법률사무소	02)586-2884	02)521-8093	서울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01호
조상희	"	변호사조상희법률사무소	02)587-9700	02)587-9701	서울 대치동 944-31 삼유센터빌딩 12층
최은순	"	법무법인장일종합법률사무소	02)522-3141	02)522-3144	서울 서초동 1554-14 영등빌딩 3층
장인태	"	법무법인한백	02)596-5551	02)596-5550	서울 서초동 1719-4 동일빌딩 4층
김호철	"	법무법인동부종합법률사무소	02)2201-2266	02)2201-6054	서울 자양2동 216-23 태인빌딩 402호
김동주	"	변호사김동주법률사무소	062)234-0525	062)234-0527	광주 동구 금남로31 금남빌딩 2층
김봉경	"	법무법인의정부종합법률사무소	0351)875-0838	0351)875-0837	의정부 가능1동 362-18 세광빌딩 2층
김외숙	"	법무법인부산종합법률사무소	051)242-0456	051)256-2161	부산 서구 부민동 3가 33-5 남경빌딩
문성윤	"	변호사문성윤법률사무소	064)756-5060	064)756-7050	제주 이도2동 1026-13 점암빌딩 3층
이태영	"	법무법인율곡종합법률사무소	0361)242-0085	0361)257-6841	춘천 호자2동 712-11 덕호빌딩 3층
정웅태	"	법무법인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062)222-2678	062)234-0195	광주 동구 지산2동 373-7
이창현	"	변호사이창현법률사무소	0331)216-2500	0331)216-4393	수원 팔달구 원천동 82-8 동명빌딩 205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실행위원

이름	직책	소속	전화	팩스	사무실
조영황	본부장	법무법인신화	02)521-2251	02)588-3455	서울 서초동 1572-18 만송빌딩 202호
이춘발	부본부장	전 기자협회 회장	02)780-4433		
임채균	변호사	변호사임채균법률사무소	02)532-7517	02)532-7538	서울 서초동 1705 청곡빌딩 서관212호
황덕남	"	변호사황덕남법률사무소	02)3482-5700	02)3482-5600	서울 서초동 1694-8 우민빌딩 601호
오옥환	"	변호사오옥환법률사무소	02)581-5051	02)581-5054	서울 서초동 1623-1 성신빌딩 401호
김창룡	실행위원	인제대 산방과 교수	052)320-3658	052)320-3526	
김상도	"	전 중앙일보 기자	02)364-2199		

제 6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의 도움은 공짜인가?

12

사안에 따라 다르다. 경비가 지출되지 않는 서비스에 관한 한 모두 무료이다. 그러나 인지대, 소송절차상의 비용 등 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만 받고 봉사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민, 형사 소송 등에 따른 구체적인 경비에 대한 보수약정은 다음과 같다.

- 척수금(심급별)		
고소, 고발(형사) 사건	100만원 이하	소비자불만분쟁조정위원회
중재사건(1심분안 포함)	150만원 이하	소비자불만분쟁조정위원회
민사사건	200만원 이하	소비자불만분쟁조정위원회
- 성공보수		
민사사건 승소금의 10% 이하		
형사사건 및 중재사건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공보수를 약정하지 못한다.		

제 7장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통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듦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언론중재제도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중재부를 두고 언론피해 상담 및 중재신청을 받고 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은 물론, 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해결방법은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반론보도의 게재(또는 방송)를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보도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정정보도청구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잘못됐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경우 보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늦어도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언론중재신청은 소정의 양식(15쪽 참조)과 문제된 언론보도, 신청인이 작성한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중재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중재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되도록 중재한다.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중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중재대리허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중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며 중재부가 직권으로 중재를 내릴 경우 21일 이내에 처리된다. 신청인과 언론사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언론사는 합의된 내용대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게재(방송)한다.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언론사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언론사는 신청인의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방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언론사가 합의한 이후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게재(방송)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부는 직권으로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신청은 중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선거보도로 인한 언론피해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의 반론보도청구는 신속하게 처리된다.

방송의 경우 방송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방송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며 방송사는 요구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무료로 방송한다.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사 대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 결정해야 한다.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 보도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언론사는 요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게재해야 한다. 청구에 불응하는 언론사 대표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재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 결정해야 한다.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은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언

론사에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무혐의나 무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반론(추후)보도 청구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부한 중재불성립 결정문이나 기타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서류(이의신청서 부분 등)를 첨부해야 한다. 반론보도청구 사건은 해당 언론사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가 아닌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처리담당부서	처리 기간	
언론중재위원회 (732-6031) 증재부 ()	언론중재신청서 14일 (중재결정시 21일)	
① 청구명	보도청구 (변경된 청구명 : 보도청구)	
신청인	② 성명 (단체명)	③ 주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국명		
⑨ 보도지면 또는 일시		
증재대상 ⑩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		
⑪ 보도내용		
⑫ 중재 신청 사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재를 신청합니다.

1999년 월 일

신청인 :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증재대상 표현물의 사본(방송의 경우 녹음 또는 녹화물이나
보도기사 전문)

수수료

없음

제 8 장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침해 판례

판례1) 이름도 성도 밝히지 않았으나 명예훼손을 인정한 경우

16

서울지방법원은 1996년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 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센세이셔널한 기사에 대해 A여성지를 발행하는 C일보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A여성지는 1994년 8월호 '독점수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제하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의 여학생이 운동권 선배와 연애 끝에 배신당한 후 호스티스 생활과 재벌회장과 동거를 하면서 남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총 48명 중 11명인 신청인들은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으로서 기사 내용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인 C일보사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전원이 주인공과 같은 경력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위 기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문은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86학번 여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신청인들은 당초 이 기사가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게재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했고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기사내용은 진실이며 다만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전주출신으로 표기했으므로 이 부분만 정정하는 정정보도 문안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결렬, 불성립되자 신청인들은 서울민사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영문이나 성만 표기하더라도 표현내용과 주위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거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된다. 기자와 언론사 측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름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름의 영문이나 성만 표시했을 때 피해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은 위자료 금액의 산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판례2) 검은 얼굴 사진을 그린 시연을 게재했어도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 경우

한 중앙일간지가 94년 9월 25일자 1면에 '지존파 신고 李양 공포의 10일'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살인조직 지존파에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 경찰에 신고,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李모양. 李양은 여전히 얼이 빠져 있다..."는 식으로 李양의 인터뷰 기사를 썼다. 그러나 이 기사 한 귀퉁이에는 李양의 상반신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물론 얼굴에 검은 선을 그어 눈을 가렸지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또 주변사람들은 금방 李양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다.

李양이 물론 이 기사를 문제삼아 소송을 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명백히 잘못된 기사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기사였는지는 얼마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한 내용에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안에서 "위 보도사진은 연쇄살인 범들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피해자이면서 범인들을 수사당국에 신고하여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여인의 눈을 가렸지만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현법 제21조 제4항)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을 위반했으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얼굴 사진에 선을 그어 두 눈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상이란 모사(模寫)된 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신체의 일부만 촬영하여 그 사진이 누구에 대한 사진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뒷모습 사진과 같이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피촬영자의 고유한 특징, 사진에 대한 설명 등 관계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누구의 사진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인쇄된 사진에 있어 눈부분이 검은 띠로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임을 알 수 있다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판례3)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신고자 및 고발자의 신원공표는 법률적으로 금지

한 일간 스포츠신문은 96년 4월 8일자 신문지면에 "30대 강도를 잡은 간 쓴 처녀 김정숙양(가명)이 자신의 집에서 현장검증 나온 경찰관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이고 있다"며 상반신 정면 얼굴사진과 함께 설명을 달고 있다. 이런 강도사건의 경

우 범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전면 상반신 사진을 공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것은 위법이다.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 및 고발자의 신원공표는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고발한 자이거나 신고한 자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판례4) 비방죄와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

대법원은 1993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후보자 비방죄에 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연설내용 중 일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연설 중 문제가 된 부분은 "김○○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데나 눈물을 흘리고 아무데나 웃고 아무데나 비방하는 몰염치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시로 표정을 바꾸는 김○○은 지방자치제나 지방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이나 의원으로 선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일 뿐 후보자 비방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대상이 되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구체적 사실이 제시돼야 한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고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추상적 판단이라도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5)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울 민사지법 1988. 5. 11 선고, 87가 합6175 판결은 화장품 선전책자에 실린 사진을 일러스트레이션 방법으로 묘사하여 백화점 광고에 사용한 사건에 대하여 "초

상의 묘사방법이 사진촬영 또는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회화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다만 사회통념상 위 광고에 그린 그림이 원고하고 식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예시하고 있다.

초상권은 반드시 사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초상화나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 그림)과 같은 회화적인 방법 또는 흡상, 입상과 같은 조각적 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초상권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문, 잡지 등에서 정치인, 배우, 기타 유명인사의 얼굴 특징을 회화화한 그림이 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비평의 목적 등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다.

제 9장 언론에서 자주 범하는 위법 취재보도사례

1. 미성년 피의자 신원공개

기자들은 취재보도시 보다 구체적으로 기사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자들은 위법의식 없이 사건기사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특히 미성년자 보도는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단골메뉴에 포함시켰다. 지금도 우리 언론에서 미성년자와 관련한 보도를 살펴보면 위법 사례를 부지기수로 발견할 수 있다. 소송에 나서지 않아서 그렇지 당사자나 이들 부모가 소송에 나서면 언론사가 결코 이기기 힘들다.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례를 살펴본다.

위반사례1) 성명, 나이, 주소, 재학중인 학교, 학년 등 모든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위반사례2)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주소를 밝히는 경우

위반사례3)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부모의 신원을 적시하거나

주변사항을 공표하여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경우

소년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이렇게 위반한 경우 신문에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2. 봉독한 부녀자 신원공개

성폭행 당한 피해자의 신원 공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잘못된 보도는 당사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여고생이 성폭행 당할 위기를 모면하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와 “모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해 비관 끝에 옥상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는 불과 글자 몇 자 차이지만 내용상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지방에서 이런 류의 잘못된 보도로 여고생이 자살소동을 벌이고 집안이 이사를 가는 등 큰 소란을 빚은 적이 있다. 사건기자는 이런 류의 사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 만큼 피해를 당한 인권을 언론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반사례1) 성명, 나이, 직장명, 집주소 등 모든 인적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위반사례2) 성은 밝히지 않고 이름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근무하는 직장주소,

직장명 등을 적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위반사례3) 목사에게 성폭행 당한 여신도의 성과 나이만을 밝혔으나 교회명, 교회주소,

영문이니셜, 가해자인 목사의 성명 등을 공표하여 본인을 추정하게 하는 경우

위반사례4) 성폭행 당한 소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신원을 공개하여 본인을 알게 하는 경우

위반사례5)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근무하고 있는 업소 또는 기거하고

있는 보육원 등의 명칭과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을 알게 하는 경우

3.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방법과 사용량 공표

약물복용이나 가스흡입 등과 같은 사건이 잦아지는 만큼 기사화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히로뽕 등 ‘백색의 공포’가 점점 우리 가까이 침투해 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기사에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이용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예가 자주 말썽을 일으키곤 한다. 기자의 전문성 부족이든 실수에 의해서든 이런 보도는 언론의 역기능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위반사례1)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방법, 사용량 등을 공표하는 경우

위반사례2)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사용방법, 효능, 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공표하여 이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과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내용은 실제로 신문과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는지 사례

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실제사례)

한 일간신문은 ‘이제는 벤줄까지 흡입’이라는 제목으로 문제투성이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를 인용하면,

“…형사기동대는 18일 환각증세에 빠지는 벤줄을 동네 약국에서 구해 흡입한 김모군(18. 서울 마포구 창전동 ○-○○) 등 8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략) 이들은 약국에서 벤줄 7병을 구입한 뒤 (중략) 비닐봉지에 넣어 냄새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중략) 황모군은 ‘벤줄이 본드나 부탄가스보다 빨리 환각상태에 빠지고 값이 싸 주위 친구들이 자주 사용한다’며 ‘동네약국 등에서 가죽침퍼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하면 의심받지 않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환각성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사용방법, 효능, 구입방법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보도했다. 이 보도를 통해 이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과오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으며 미성년 피의자들의 주소까지 공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각 언론사 사회부 데스크들의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최근 들어 자체적으로 사건보도취재준칙을 제정, 시행하는 등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다수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알 권리 충족’이라는 미명 하에 수없이 위법보도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4.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 및 고발자의 신원공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실제사례)

한 일간신문은 97년 2월 17일 밤 '이한영씨 피살사건 이후 목격자 증언'이라며 목격자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보도했다. 수사나 심리증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신원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런 사건의 피해자나 신고자의 경우 관련범죄로 인해 보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신원공개를 막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보다 자세하고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한다는 과잉친절행위로 위법보도하는 경우가 찾다.

5. 피의사실 공표

한국언론이 관행적으로 범해오는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가 피의사실 공표이다. 헌법상 모든 범죄혐의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하고, 형법 제126조는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밝힐 뿐만 아니라 범인 혹은 범법자로 단정하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는 언론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범이 되는 셈이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이런 류의 기사가 버젓이 나오지만 외국 언론에서는 위험천만한 보도이다.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또 중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언론으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피해자와 언론 모두를 위해 이런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실제사례)



이호소송증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달라며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유○○씨는 공소제기 전에는 공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허위로 밝혀진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소송대상은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와 공표내용을 공개한 6개 언론사였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1996년 2월 27일 원고 승소와 함께 국가와 6개 언론사에게 5명의 원고에게 최하 1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원래 1심에서 원고는 4개 언론사에 대해 패소했고, 2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4개 언론사에 패소한 원고와 원고에 의해 패소한 국가와 2개 언론사가 제기한 쌍방 항소심에서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국가와 2개 언론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4개 언론사는 1심과 달리 위와 같은 이유로 패소한 것이다. 결국 6개 언론사 모두 패소했다.

6. 개인이나 가족의 자살사건을 무조건 기사화시키는 관행

한 개인의 자살사건이든 가족 집단자살사건이든 외국에서는 특별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사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언론 특히 지방언론에서는 이런 류의 기사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죽음이라는 국적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개인의 비극을 보도할 만한가의 가치평가를 하기도 전에 기사화하는 관행이 있다. 죽음은 중요한 인간사이고 언론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한 개인의 인권존중은 어떤 경우에도 무시될 수 없다.

실제사례)

B지방신문은 94년 10월 1일자 지면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내용은 '경운기 사고 부모 꾸중 국교생 음독자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중 "...○○군(필자가 익명으로 표기)이 지난달 초 경운기를 몰다 운전미숙으로 홍모군(12)을 치어 중상을 입혀 부모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이를 비판 음독자살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확인결과 "○○군(필자가 익명으로 표기)은 경운기에 다친 홍모군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해 이를 비판, 현장에서 농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부모와 이웃사람들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를 쓴 담당기자는 나중에 스스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했음을 인정했다. 한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이 공중에 알려지는 데도 많은 한국언론은 이처럼 확인조차 않고 기사화하는 현실이다. 언론이 진실로 죽음이 중요한 기사감이라고 아직도 고집한다면 죽음에 따른 과정과 죽음으로 몰고간 결정적 요인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도 이런 점들에 대한 성의있는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 개인과 가족에게 치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엉터리 보도가 됐다. 무엇보다 이 보도가 어떤 공익성 때문에 왜 보도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잘못된 보도는 그것도 지방신문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넘어가

기에는 한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할 정신적, 사회적 대가가 너무 크다. 또 이런 보도는 현장을 보지 못한 일반 주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의 조사자료나 소송의 근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명백한 증인이 있고 사건당사자가 있을 때는 정보도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시민은 언론의 보도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류의 기사가 과연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부이다. 외국언론에서는 가족의 집단자살이든 개인의 자살이든 특별하게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기사화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우리는 특별히 보도할 만한 공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죽음에 대해서라면 더구나 자살건이라면 대부분 보도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적시한 사건에 한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보도할 만한 공공성이 없다. 따라서 보도해서는 안 되는 한 개인의 사적인 불행과 비운일 뿐이다.

7. '설(說)'이나 소문을 기사화

'~라는 설이 있다', '○○○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다', '현철이가 리베이트로 2천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등 밀도끌도 없는 설과 소문을 보도하는 것은 어떤가. 설과 소문은 취재의 단초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자체가 기사로 둔갑하는 데는 무리와 위법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기사는 마치 전통처럼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국언론, 그것도 고급지를 자부하는 중앙언론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어떻게 보면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 짹이 없다.

중앙지, 지방지 가릴것없이 소문이나 설을 가지고 기사화하는 데는 한국언론이 사실 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만큼 빛나간 관행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

언론의 경우도 너무나 쉽게 가까이서 이런 류의 기사를 접하게 된다. 기자들의 확인취재와 검증정신이 다시 한번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실제사례) '설'을 기사화하여 오보가 된 경우

전남 광주의 한 지방신문은 93년 12월 16일자에 '의장압력 사실무근, 영광군 인사관련' 이란 정정보도를 냈다. 그 내용은 "본지가 지난 11월 9일자 11면에 '의장이 군인사 관련' 이란 제목으로 군인사와 관련해 '영광군 군의회 의장이 압력을 행사해 인사관행이



깨졌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수수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1월 6일자 영광군의회 의사과 직원인사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근거한 의회의장과 군수와의 정당한 인사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의 사례는 입증자료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은 '설'을 바탕으로 허위보도해 당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일반적 경우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류의 설과 근거가 모호한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가 버젓이 언론에 등장, 당사자나 공직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언론의 각성과 시정이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이런 보도는 언론의 정당한 권리감시 보도라기보다 오히려 자치단체 내외의 혼란과 불신을 조장한다. 이는 곧 자기 고장의 명예와 발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자치단체장의 위임받은 권위마저 깨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8. 제목이나 편집상의 실수로 인한 오보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간신문은 전체 기사면적의 약 5분의 1(21%)이 제목이라고 한다. 이는 독자들의 눈에 확 뜨이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목의 속성상 과장되거나 생략되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본문내용이 지면관계상 잘려나가 정작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제목으로 뽑히기도 한다. 문제는 많은 독자들이 내용보다 제목을 대충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신문을 본다는 점이다.

요즘은 지면도 많이 늘어나고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신문을 꼼꼼히 보는 사람들이 드물다. 대부분 바쁜 일과 속에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만 보거나 제목을 대충 훑어보는 식으로 본다. 따라서 편집기자들은 어떻게 하면 독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갖은 묘안과 아이디어를 짜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바로 제목을 어떻게 무엇으로 정하느냐의 문제다.

제목이 섹시하고 강하면 눈길을 끌게 되고 관련기사가 읽히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형의 제목을 찾기 위해 편집기자들은 무리하게 논리를 비약시키기도 하고 제한된 지면에 맞추기 위해 쉽게 단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언론이 종종 무리수를 범하게 된다. 언론은 좀 앞서나갔을 뿐, 혹은 약간 내용에 차이가 났을 뿐 전체적으로 별로 틀린 게 없다고 자위할지 모르나 사안에 따라서 한 개인을 혹은 조직을 파멸시키거나 붕괴시키는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특히 스포츠지나 여성잡지 등은 이런 무리한 제목 달기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정적인 '제목' 때문에



한 개인이 일생을 망친 경우다.

실제사례) 무리한 제목 때문에 언론사가 제소당한 경우

1993년 6월 중순 결핵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7개월 가량됐다는 40대 남자가 박모(44) 약사에게 찾아와 최근 다리가 붓는다면서 15일분의 한약과 양약을 조제해 갔다. 이 약을

복용하던 남자는 5일만에 갑자기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박 약사가 지어준 약에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신문이 '약사 조제 한약 먹고 절명'이라는 제목으로 4단 크기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제목은 약사가 지어준 한약 때문에 환자가 절명한 것으로 이해됐다. 이 보도가 있은 후 박 약사는 주변으로부터 눈총과 지탄을 받기 시작했으며 약국을 찾는 손님도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박 약사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

다행히 부검결과 사인(死因)은 폐결핵 악화로 밝혀지고 박 약사가 조제한 약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따라서 '약사 조제 한약 먹고 절명'이라는 신문의 제목내용과는 사실이 다른 것으로 판명났다.

박 약사의 정정보도 중재신청으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했으나 박 약사의 피해는 조그마한 정정기사만으로 구제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박 약사는 끝내 약국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부검결과 발표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별 근거도 없이 함부로 '약사 조제 한약 먹고 절명'이라고 단정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보도이며 언론 윤리강령위반이다. 더구나 이런 제목은 가뜩이나 깊이 끌이 패인 한약사와 약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이간질시키는 보도일 수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항상 큰 그림 안에서 기사의 방향과 내용을 고민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9. 타매체 기사 베끼기와 통신사 기사 전재

한국 언론현실에서 타매체 기사를 베끼는 것이 드문 현상은 아니다. 소위 낙종을 하게 되면 비슷하게라도 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 크기는 줄이는 한이 있어도 대부분 기사를 베껴서라도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처럼 타언론사의 기사를 베껴서 냈다가 오보로 판명될 경우, 그 책임은 당연히 베껴서 보도한 언론사에 있다.

또 통신사의 통신문을 크레디트를 달지 않은 채 전재하고, 자사의 취재기사인

것처럼 리드문만 교묘히 바꾼다든가, 통신문을 적절히 섞어서 기사를 다시 만든다든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색하여 자사의 취재기사로 변질시킬 경우 책임은 역시 해당 언론사가 지게 된다. 심한 경우 통신문을 이용하여 사건현장에도 가지 않고서 자사의 기자 이름으로 게재하는 비윤리적인 보도를 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언론사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통신사의 통신문 게재가 면책되려면 미국의 경우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통신문의 기사가 정평있는 통신사에서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그 통신문의 허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셋째, 피고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 기사에서 허위의 개연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넷째, 그 기사를 게재하는 데 본질적인 수정 없이 전재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통신문을 윤색없이 전재한 경우 기사취재의 여건, 진실에 접근하려는 기자의 취재 태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통신문 전재에 의해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여도 통신문을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실제사례1) 통신문 게재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3. 8. 12. 선고 93가 합2361판결에서 통신문을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 승소를 판시했다. 판결문은 "피고들은 기사의 제목만 연합통신과 조금씩 다르게 붙였을 뿐 연합통신의 통신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 피고들로서는 지방지인 관계로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연합통신이 제공한 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연합통신이 제공한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들이 위 기사를 작성 배포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실제사례2) 통신문 게재한 언론사가 패소한 경우

한 전직 국회의원이 97년 4월 한 지방신문사를 상대로 '악의적 보도 때문에 낙선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前의원은 서울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보가 투표 당일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로기사를 쓰지 않는 언론의 관행을 어기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않은 채 허위보도를 해 당선안정권에 있던 자신을 낙선시켰다"고 주장

했다.

○ 前의원은 96년 4·11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에서 상대에게 4백97표의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당시 △△일보는 15대 총선 당일인 96년 4월 11일 1면 중간머릿기사 등으로 “○후보가 ○○○씨로부터 1천2백만원의 공천현금을 받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며,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 前의원은 소장에서 “선거 전후를 막론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검찰조사도 받은 적이 없어 △△일보의 보도는 분명한 허위기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허위의 논평과 보도를 금지한 통합선거법 제96조를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연합통신 등의 기사를 받아 쓴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는 “96년 2월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천현금 의혹을 첫보도했었으며 연합통신 등이 ○ 前의원에 대한 검찰소환 방침을 보도해 이를 비중있게 다루었다”고 말했다. ○ 기자는 또 “○ 前의원에게 확인을 못한 것은 ○후보가 당시 선거운동 때문에 오지에 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언론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대한 사실을 최소한의 확인없이 ‘통신기사를 받아 쓴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결하고 있다.

10. 데스크의 무리한 요구나 예단, 독단, 무소신

언론사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불법적 취재보도 이면에는 반드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데스크(부장)의 무리한 지시나 일방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권위주의적 명령식 지휘체계가 갖춰진 언론사의 편집국이나 보도국의 분위기에서 데스크의 영향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취재자가 작성한 기사의 논조를 심할 경우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 또 보도물을 부장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기사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권한이 당연한 것으로 데스크는 인식하고 있다. 기사물을 취재해 오는 것은 취재기자이지만 이것을 보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최종판단은 데스크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데스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혹은 부당하게 기사가 처리될 수 있음을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예는 일선 제작현장에서는 많이 목격될 수 있다.

(실제사례)

1993년 10월 10일 격포 앞바다에서 전복돼 292명이 수장된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사고였다. 동시에 훼리호 선장 백○○씨 생존보도는 국내 언론사 최악의 오보라고 언론계와 학계에서 동시에 떠들어댔다. 한국기자협회는 93년 언론계 10대 뉴스로 백 선장 오보사건을 꼽았다. 오보의 핵심은 죽은 백 선장을 대다수 언론에서 살아있다는 식으로 잘못 혹은 성급하게 보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언론에서는 취재기자가 ‘백 선장은 죽은 것이 확실시 된다’는 기사를 데스크가 일방적으로 ‘살아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물론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사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처리됐기 때문이다. 당시 모 일간 신문에서 데스크를 본부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를 해 몇몇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취재기자는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기사를 올려보냈는데 방송이나 타신문사에서는 모두 ‘살아있다’, ‘죽으로 도피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우리만 죽었다고 보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됐다. 그래서 안에서(데스크) 고쳐서 우리도 살아있다는 식으로 나갔는데 취재기자에게 미안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백 선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백 선장 유가족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지만 이 내용 때문에 어떤 언론도 처벌을 받았거나 손해배상을 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다. 우선은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혹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도로 과연 데스크가 권한행사 만큼 큰 책임을 지게될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제작과정상 나타난 데스크의 부당한 간섭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보도물을 법정에서 곧이 곧대로 말할 기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판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제작관행과 기자들의 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위수 판사는 “보도과정에서 데스크의 과오나 실책이 드러나면 당연히 데스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편집국에서 설혹 데스크의 실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곧이 곧대로 자기 선배를 벌주라고 말할 수 있는 기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데스크의 입장도 곤혹스럽다. 많은 기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아래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전달, 수렴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데스크의 실책이나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공방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의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경지방재판소는 1956년 11월 5일 소위 ‘내자식 남의 자식’ 사건에서 데스크

의 과실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A 부부의 자식이 운전자 B의 트럭에 치어 사망하면서 비롯됐다. A-B간에 위자료 협의 등이 잘 이행되지 않고 급기야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취재한 한 신문사의 취재기자는 '비틀어진 위자료 백만엔',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의 복수, 모자살해 기도' 등으로 기사를 써 데스크에 넘겼다. 데스크는 전문 논평가에게 의뢰, '법률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빚은 비극', '일정기간이 지나면 냉정해 질 것'이라는 논평가사도 함께 실었다. 그러자 A 부부는 이 신문사와 취재기자를 제소했다.

이에 대해 동경지방재판소는 ‘취재기자의 책임에 관해 기자가 취재함에 있어 A부부에 대해 악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객관적인 취재송고가 데스크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양적으로 취사선택되어 질적으로 강조감쇄(強調減殺)됨으로써 취재기자의 예상에서 벗어난 기사가 되어 계재. 배포된 경우에는 취재기자에게 과실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데스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데스크 과실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데스크의 책임을 검토하여 해당기사의 성질상 조사를 다하고 신중을 기할 여유가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A부부가 조사를 거부했다든가 취재를 곤란하게 만든 사정도 없는데도 취재기자의 송고에 대해 데스크가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취재내용을 전실인 것으로 확신하여 데스크가 편집에 관계되는 제목이라든가 평론가의 담화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문편집’의 실제 사무를 담당한 데스크가 신문제작기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신문이 갖는 거대한 영향력에 비추어 데스크에 요청되는 진실보도를 위한 주의의무를 생각한다면 결국 피고 신문사의 데스크가 본건기사의 내용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일반을 수긍시키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제10장

대상매체는?

1.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서적 등 인쇄매체
 2. 라디오, TV 등 전파매체
 3. 통신사 등 인터넷매체

早晴

언론 피해 구제 관계 법

1. 한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혐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④ 혐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만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693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4. 형벌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은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 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중재절차 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 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위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 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계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 (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계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계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중재관할권 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계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계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방송법

제4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방송국이 향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수에 의하여 동일한 효

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정보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종합유선 방송법

제45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서 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유선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종합유선방송국이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시간대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에 프로그램공급자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공급자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국가·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

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⑩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제8조의3[방송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의하여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방송사 (제70조(방송광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대표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방송사의 대표는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방송사의 대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④ 방송법 제4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1997. 11. 14.〉

제8조의4[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까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공표

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언론사의 대표는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하되, 다음 발행호가 선거기간 종료후에 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언론사의 대표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1997. 11. 14.〉



신문과 방송 보도로 피해를 보셨습니까?

언론개혁시민연대 ☎ 732-7319로 상담하십시오.

☎ 732-7077은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운영하는 언론피해 상담전화입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와 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전화 732-7319, 팩스 732-7076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소속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 구제방법을 알려줍니다. 상담접수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받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전화로 방문상담을 신청한 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실(프레스센터 1807호)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 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도와드리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변호사들이 실비만 받고 언론소송을 대리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807호 전화 : 02) 732-7077, 팩스 : 02) 732-7076, 통신ID 언개연(하/천사/유)